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의원·복기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355
----------	-------

발의연월일 : 2026. 6. 19.

발 의 자 : 최혁진·복기왕·안태준
이정문·이인영·조계원
김준형·정혜경·황운하
전종덕·오세희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또는 항공안전장애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것을 알게 된 항공종사자 등 관계인으로 하여금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무적으로 보고(이하 “항공안전 의무보고”라 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주류·마약류 섭취 및 항공기 내 흡연을 엄격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항공안전 의무보고 대상에는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주류·마약류 섭취 및 항공기 내 흡연 행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항공종사자 또는 객실승무원이 주류·마약류를 섭취하거나 기내에서 흡연한 사실이 발생해도 국토교통부에 즉시 보고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실제로 항공기 기장이 기내에서 흡연한 사건이 발

생했음에도 항공사가 수개월이 지나서야 내부 징계에 그치고, 국토교통부는 언론보도와 국회의 자료요구를 통해서야 해당 사실을 인지하는 사례가 있었음.

이에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주류·마약류 섭취나 기내 흡연이 발생한 경우에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여 항공안전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또한 기내 흡연의 범위에 전자담배 등을 포함하고,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함으로써 공중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항공운항 관계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비행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2, 제59조 등).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의2 중 “흡연을”을 “궐련, 전자담배, 파이프담배 등 흡연을”로 한다.

제59조의 제목 중 “의무보고”를 “의무보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 ②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제57조에 따른 주류등의 섭취 및 사용 또는 제57조의2에 따른 항공기 내 흡연 사실을 알게 된 항공종사자 등 관계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60조제1항 중 “제59조제1항”을 각각 “제59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항공기준사고 또는”을 “항공기준사고,”로, “항공안전장애가”를 “항공안전장애 또는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주류등의 섭취 및 사용, 항공기 내 흡연 사실이”로 한다.

제62조제5항 본문 중 “항공기준사고 또는”을 “항공기준사고,”로, “항공

안전장애가”를 “항공안전장애 또는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주류 등의 섭취 및 사용, 항공기 내 흡연 사실이”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항공기준사고 또는”을 “항공기준사고,”로, “항공안전장애가”를 “항공안전장애 또는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주류 등의 섭취 및 사용, 항공기 내 흡연 사실이”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제59조제1항”을 “제59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148조의3 중 “제59조제3항”을 “제59조제4항”으로 한다.

제153조의2제1항 중 “1천만원”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500만원”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으로 한다.

제166조제5항제2호 중 “제59조제1항”을 “제59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항공기준사고 또는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를”을 “항공기준사고,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 또는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주류 등의 섭취 및 사용, 항공기 내 흡연 사실을”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7조의2(항공기 내 흡연 금지) 항공종사자(제46조에 따른 항공기 조종연습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및 객실승무원은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에는 항공기 내에서 <u>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u></p> <p>제59조(항공안전 <u>의무보고</u>) ① (생략) <u><신설></u></p> <p>② 국토교통부장관은 <u>제1항</u>에 따른 보고(이하 “항공안전 의무보고”라 한다)를 통하여 접수한 내용을 이 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일반에게 공개해서는</p>	<p>제57조의2(항공기 내 흡연 금지) ----- ----- ----- ----- ----- ----- ----- <u>-----<u>궤련, 전자담배, 파이프담배 등 흡연을</u>-----.</u></p> <p>제59조(항공안전 <u>의무보고 등</u>) ① (현행과 같음)</p> <p>② <u>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제57조에 따른 주류등의 섭취 및 사용 또는 제57조의2에 따른 항공기 내 흡연 사실을 알게 된 항공종사자 등 관계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u></p> <p>③ <u>-----<u>제1항 및 제2항</u>-----</u> ----- ----- ----- -----</p>

아니 된다.

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른 항공종사자 등 관계인의 범위, 보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시기, 보고 방법 및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60조(사실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9조제1항, 제120조제2항, 제129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또는 제59조제1항, 제120조제2항, 제129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지 않았으나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또는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가 발생한 것을 인지하게 된 경우 이에 대한 사실 여부와 이 법의 위반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제62조(기장의 권한 등) ① ~ ④ (생략)

⑤ 기장은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또는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가 발생하였을 때에

-----.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⑤ 제1항 및 제2항-----

-----.

제60조(사실조사) ① -----

-----제59조제1항 및 제2항-----

-----제59조제1항 및 제2항-----

-----항공기준사고,

-----항공안전장애 또는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주류등의 섭취 및 사용, 항공기 내 흡연 사실이-----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2조(기장의 권한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항공기준사고,-----항공안전장애 또는 항공종사자

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장이 보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항공기의 소유자등이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⑥ 기장은 다른 항공기에서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또는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가 발생한 것을 알았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무선설비를 통하여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항공종사자 등 이해관계인이 제59조제1항에 따라 보고한 경우에는 제5항 본문 및 제6항 본문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8조의3(항공안전 의무보고에 관한 죄) 제59조제3항을 위반하여 항공안전 의무보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및 객실승무원의 주류등의 섭취 및 사용, 항공기 내 흡연 사실----- . --

⑥ -----항공기준사고,-----
-----항공안전장애 또는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주류등의 섭취 및 사용, 항공기 내 흡연 사실----- . --

⑦ -----제59조제1항 및 제2항-----

제148조의3(항공안전 의무보고에 관한 죄) 제59조제4항-----

제153조의2(항공기 내 흡연의 죄)

①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제57조의2를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주기 중인 항공기 내에서 제57조의2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6조(과태료) ① ~ ④ (생략)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략)

2. 제59조제1항(제10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또는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3. ~ 5. (생략)

⑥·⑦ (생략)

제153조의2(항공기 내 흡연의 죄)

①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②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제166조(과태료)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1. (현행과 같음)

2. 제59조제1항 및 제2항-----

항공기준사고,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 또는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주류등의 섭취 및 사용, 항공기 내 흡연 사실을-----

3. ~ 5. (현행과 같음)

⑥·⑦ (현행과 같음)